⊠ 병아리 수입추천—한국가금협회 경유 ⊠

과거 농림부에서 관장하여 처리하던 외국병아리 수입추천을 1972년부터 한국 가금협회를 경유하여 추천하게 되었다. 이로서 한국 가금협회에서는 과거 무분별한 외국계의 도입이 과잉생산의 주원인이었던 것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도입계의 수입을 조절함으로써 양계공황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고, 종계장의 시설이 미비한 곳을 점검, 추천 심의과정에서 고려함으로써 불량한 병아리를 구입함으로 일어나는 양계인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협회에서 현재 실시중인 닭의 경제능력검정에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계통을 출품시켜 국내에서 외국계의 능력을 판단할 수 있고 년차적인 계획에 의거 점차 국산계의 개량과 병행하여 외국계를 국산계로 대체하여 외화의 소비를 년차적으로 감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 고시에 의하여 발표된 내용을 알아보자.

병아리 수입 추천(농축산 1162—497, 72.2.22)

상공부 고시 제 8294호(72.2.10)로 변경 고시된 '72상반기 수출입 기별 공고상 농림부장관의 추천분에 한함으로 수입제한 품목의 수입 추천요령을 농림부 공고 제 426호(72.2.21)에 의거 가금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가금협회를 경유하도록 한다.

또한 이는 수출입기별 공고상 특별한 변경이 없는 한 다음 기로 이월 적용함.

1. 추천품목 및 수량

닭, 오리, 거위, 칠면조로서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종과 수량에 한함.

2. 추천대상자

국내 실수요자, 또는 전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자. 다만 사단법인 한국가금협회장을 경유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추천요구한다.

3. 구비서류— 종축증명서 1부

이상이 농림부의 공고이며 이에 따라 한국가금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종계장 및 부화장에 공고함으로써 도입계의 추천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공 고

1. 외국 병아리의 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 협회 회원으로서 농림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심의 2주일 전까지 당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 추천 신청서(본회 소정양식) 나 : 수출국의 공인관서에서 발급하는 종축증명서 또는 사본

다 : 경영주 또는 기술 담당자의 이력서. 라 : 각서(본 협회 소정양식)

마 : 양계경영 현황 및 계획서

① 종계 사육현황 ② 초생추 월별 생산계획 ③ 종계장 및 부화장 시설현황

④ 용도별 건물표시 ⑤ 공인기관에서 실시한 경제능력 검정성적

2. 도입계 추천 심의 위원회의는 월 2회이내 실시 예정이며 종계장 및 부화장의 시설 상태를 확인한다.

3.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국부화협회의 회원으로서 부화협회의 제 규정을 이행하는 자에 한한다. 이상이 한국가금협회의 공고 내용이며 이외에 필요사항은 한국가금협회에 문의를 바라며, 추천심의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금협회의 통계조사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